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18

발의연월일: 2020. 10. 23.

발 의 자:이용빈・신정훈・양정숙

윤준병・송옥주・이용선

이은주 · 이탄희 · 장경태

한병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일부 용어(애완동물)의 경우,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으로 잔존해 있음.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이라는 용어는 1983년 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에서 "애완동 물"이란 말 대신 사용하기로 제안되어, 현재 미국/유럽/일본 등 대부 분의 국가에서 널리 사용 중임.

이에 반려동물 천만시대의 국민정서와 눈높이를 감안하여, 반려동물에 관한 부적합한 법률용어를 재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법률 제 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애완동물"을 각각 "반려동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야생화된 동물의 관리) ①	제24조(야생화된 동물의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버려지거나 달아	
나 야생화(野生化)된 가축이나	
<u>애완동물</u> 로 인하여 야생동물의	- <u>반려동물</u>
질병 감염이나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	
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 그 가축이나 <u>애완동물</u> 을	<u>반려동물</u>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고시하	
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